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 73호

2022년 제9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2년 제9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22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부서	임용분야	임용등급 (일반임기제)	선발예정 인 원
인 사 과	노무관리	지방행정주사	1명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연령·성별 제한 없음(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나. 개별 자격요건 : 임용 예정 분야별 다음의 자격 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임용 후 수행 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예시 : 주 20시간 근무)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임용예정 부 서	임용분야	임용등급 (일반임기제)	자격기준 (면접시행 (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인 사 과	**노무관리**	지방행정주사	**(자 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노무관리 분야 근무경력

다. 직무내용

임용분야 (임용부서)	임용등급 (일반임기제)	주요업무
노무관리 (인 사 과)	지방행정주사	·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와의 임·단협 교섭(체결) · 도 및 시·군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도·자문 ·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련 진정·고발·소송 등 대응 · 공무원(공무직)노조의 불법관행 해소 및 합법적 노조활동 지원 · 기타 노사관련 추진업무 등

3.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8308호, 2022. 1. 21.)

❍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32605호, 2022. 4. 27.)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217호, 2022. 9. 1.)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경상남도 규칙 제3305호, 2022. 1. 27.)

4. 보수 수준

○ 근　　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름

(단위 : 천원)

구　분 (일반임기제)	등　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지방행정주사	6급(상당)	77,932	51,928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시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 능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는「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임용 기간

○ 2년(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6.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항목에 대해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검정

7. 시험 일정

공 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자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2. 12. 22.(목)	'23. 1. 3.(화) ~ 5.(목) * 방문접수는 09:00~18:00 가능	'23. 1. 20.(금)	'23. 1. 26.(목) ~ 27.(금)	'23. 2. 7.(화)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각 분야별 세부일정 확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www.gyeongnam.go.kr)에 게시**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방문접수 대신 등기우편 접수 권고

다. 접수장소 : 경남도청 인사과 채용담당(본관 2층)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인사과 채용담당

등기우편 접수 유의사항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정**(택배, 퀵서비스 활용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담당자 전화확인 후 송부

✣ **응시표 회신을 위한 일반 편지봉투 동봉**(등기용 우표 부착, 수신인 성명·주소 기재)

9.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실시

○ 1차 공고 응시자는 기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10.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 1부**(붙임 양식)

- 응시수수료 : 경상남도 세외수입고지서 납부(우편접수시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금　　액 : 5급(상당) 10,000원 / **6·7급(상당) 7,000원** / 8·9급(상당) 5,000원
• 납부방법 : 원서접수 시 발급한 세외수입고지서 금융기관 납부(당일)
• 유의사항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불가

② **이력서 1부**(붙임 양식)

- 학력, 자격, 상훈, 경력, 저술, 강의 등 마지막 부분에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단, 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 불가)

③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 붙임 양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3매 이내, 붙임 양식)

⑤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붙임「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제출 시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조회

⑥ **최종 학력증명서 각 1부**(원본)

- 박사 학위는 석사·학사 학위, 석사 학위는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

⑦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 인정 범위 해당 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 불가)
-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및 서명(날인),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성격 증명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증명서류,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첨부

※ 비정규직(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 출력 또는 공단 방문
- **경력증명서의 경력 검토를 위해 가입기간을 "전체기간" 선택**
- **경력증명서 발행기관명과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의 근무기관명이 불일치 할 경우 동일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

⑨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변호사, 공인노무사)**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양식)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 제출
- 모든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증명서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함
  (예시 :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합산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상·중·하의 평정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자, 단 동률이라면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평정 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처리기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 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 로 평정

○ 최종합격자 발표 :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게시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 바람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림

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

마.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바.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의 발생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사.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원칙(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제출가능)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되며,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을 수 있음

아.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자.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차.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 7일 전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채용담당 ☎055-211-3523)로 문의하시기 바람

13. 코로나19 예방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에는 응시자 외에는 출입을 전면 통제함

나. 시험 응시자는 손소독,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 진행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함

* 응시자 신분 확인 절차 진행시에만 마스크를 벗고 확인

다. **코로나19 확진자, 고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접촉자 및 유증상자**는 해당부서(경상남도 인사과, ☎055-211-3523)로 **사전 신고**, 시험실시기관의 조치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라. **응시자 중 시험당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을 이용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 될 수 있음

마.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일까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을 통해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 모든 응시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코로나19 예방조치 소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